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임미애 · 이연희 · 이용우
김남근 · 윤종오 · 박민규
박해철 · 윤건영 · 정준호
송옥주 · 박찬대 · 이재관
김동아 · 노종면 · 송기현
주철현 · 송재봉 · 김승원
이원택 · 강득구 · 김원이
윤준병 · 최혁진 · 이병진
전종덕 · 박지원 · 권향엽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종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현이 대표발의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 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 제20782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0.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